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9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강승규 · 김선교 · 임이자
서지영 · 조지연 · 이종욱
서천호 · 주진우 · 이양수
김상훈 · 유상범 · 박충권
김은혜 · 조은희 · 고동진
김성원 · 김위상 · 박정하
윤용근 · 윤상현 · 김도읍
박대출 · 강대식 · 서범수
신성범 · 김종양 · 서일준
박성민 · 정연욱 의원
(29인)

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 · 첨단화 · 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

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투기 등 농업외목적의 보유·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농업경영자’를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현행 ‘위탁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위탁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 3항 신설).

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 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지를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안 제9조).

마.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구·읍·면의 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 23조 및 제24조의2).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실질적농업경영자”란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작업위탁경영”이란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와 함께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용할”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또는 제3호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농지의 위탁경영)”을 “(농작업의 위탁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를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수탁받은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여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호 중 “위탁경영을”을 “농작업위탁경영을”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농업경영의”를 “농작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를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구·읍·면의 장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중 “등을”을 “, 실질적농업경영자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중 “등”을 “및 농업경영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임차인은”을 “, 임차인 또는 실질적 농업경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실질적 농업경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실질적농업경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중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 위탁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로, “사용대차인에게”를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대차인은”을 “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중 “농지”를 “농지대장 및 농지”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받은 농지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실질적농업경영자”란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
5. (생 략) 6. <u>“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u>	5. (현행과 같음) 6. <u>“농작업위탁경영”이란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u>
6의2. ~ 8. (생 략)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 ② (생 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생략)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
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
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와 함
께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와 농
업경영의 지속가능성·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
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금지 행위)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
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
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
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후단 신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
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
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
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
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하는 경우

<신 설>

제9조(농작업의 위탁경영) ① ---
-----소유 농지를 실질
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
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수탁
받은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농지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
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

1. -----

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단서 신설>

2.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
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
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생략)

----- . 다만, 농
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여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작업위탁경영을

4.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
· 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9. (생략)
- ② · ③ (생략)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1. (현행과 같음)
2. -----
-----농작업-----

--

3.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구·읍·면의 장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
한다.

③ ~ ⑥ (생략)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
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
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질적농업경영자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및 농
업경영정보 등 변경신청) ① -
-----, 임차인 또는 실질적
농업경영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실질적 농업경영자가 변
경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

본 등의 교부) ① · ② (생략)

<신 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본 등의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실질적농업경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 위탁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또는 농업경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u>사용대차 인에게</u>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 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u>사용대차 인</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와 이 법에 따른 <u>농지</u> 관련 자 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③ (생략)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u>소유 농지</u>	<u>정보</u>----- ----- -----<u>사용대차인 또는 실질 적농업경영자에게</u>----- ----- ----- ----- ----- -----<u>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 경영자는</u>-----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농지대장</u> 및 <u>농지</u>----- -----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 ----- ----- -----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	--

<u>를 위탁경영한 자</u>	<u>받은 농지를 다른 자에게 재</u> <u>위탁한 자</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